

『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4일

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명 및 조례 근거 조항명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,
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안 경 우

□ 본 「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상위법인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
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·조문정비(안 제1조 제7조)
- 자문위원회 위촉 관련 사항 추가(안 제2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
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